

간이·일반과세자 선택 노하우



서종태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 비결

창업하면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부분의 신규창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때도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과세유형을 선택해 절세할 수 있다. 여기서 간이과세,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과세유형의 구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간

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이 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 씩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 기간에 대해 납부세액을 결정해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 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만약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기 위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원재료 구매 등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정해져 있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가 계산된다.

업종별 부가율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5%, 소매·재생용재료수집판매·음식점업은 10%, 제조·숙박·운수·통신·농어업은 20%, 건설·부동산임대·그밖의서비스업은 30%이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도매업으로부터 1100만원(매입액 1000만원+매입세액 100만원)을 매입비용으로 지출했다면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액 3300만원 × 부가율(10%) × 세율(10%) - 매입세액 100만원 × 부가율(10%)인 23만원을 납부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3300만원(공급가 3000만원+매출세액 300만원) 매입비 1100만원(매입액 1000만원+매입세액 100만원)의 경우 매출세액 300만원 - 매입세액 100만원인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초기 인테리어나 재고 매입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많이 부담하였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현중세무회계 서종택세무사

스튜어드십코드 단상



기자 수첩

손 엄지
(파이낸스&마켓부)

국민연금 최고의 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마침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2016년부터 코드 도입을 준비하고, 지난해 본격 연구용역을 거쳐 탄생한 귀한 제도다. 귀한 자식(?)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국민연금은 지난 달 17일 공청회를 통해 마지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6일 초안 도입을 공포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노동자 층과 사용자 층

위원간 의견 대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자리에선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30일 열린 ‘제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대립을 겨우 봉합하고, 초안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들이 겨우 봉합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다. 앞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재검토’ 사안으로 미루면서 노동자 층 일부 위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동자 층 위원의 입장을 수렴해 ‘제한적 경영참여’만 하겠다

는 이도저도 아닌 결론을 내놨다.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 하지만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또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안 도입 때 겪은 ‘난항’은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은 무엇인지, 구비해야 하는 ‘제반여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서다. 국민연금이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때 노동자 층, 사용자 층 모두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두고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sonumji301@metroseoul.co.kr

인사

◆통일부 ◇과장급 전보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최용석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 박상돈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변영만
◇과장급 전보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성용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장 배소명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임용 △민원조사단장 김영신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 승진(나급) △전

략양식부장 박미선 ◇과장급 승진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배봉성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장 허영백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승진 △류기정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기획팀장 서영조

△경영기획팀장 강성준 △정책팀장 배대웅 △인재

경영팀장 배석현 △총무부지팀장 김대욱

◆아프로서비스그룹 ◇아프로서비스그룹 △부사

장 남광혁 △이사 탁용원 ◇OK저축은행 △이사

이정우 △홍보실장 조성익 △부평지점장 황의옥

△가산지점장 이원우 ◇OK캐피탈 △자금부장 김

동훈

◆동양생명 ◇승진 △융자팀장 신창호 △기업금융

팀장 김의경 △업무지원팀장 최인경 ◇전보 △디

지털혁신파트장 송남종

◆한화생명 ◇홍보실장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본부장·부장

△기술사업부소장 △인해성 친환경운송연구본부장

△신승호 해양플랜트·에너지연구본부장 △김선영

△해양안전환경연구본부장 △박종원 해양ICT연구

본부장 △강성길 정책협력부장 직무대행 △박문배

감사부장 △정찬금 기획부장 △송우용 행정부장

△센터장·실장 △김형우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장 △문덕수 해수에너지연구센터장 △박철수 해양

방위연구실장 △정인 정책개발실장 △신동욱 기획

예산실장 △서재성 연구관리실장 △양준혁 성과혁신실장 △윤재열 인재경영실장 △박도연 총무구매실장 △오용준 인프라운영실장

부모

▲정소영(전 농수산부 장관) 씨 별세, 박재옥 씨 남편, 정창희·준화·명화·은화 씨 부친상, 최동진(변호사) 씨 장인상, 서미혜 씨 병부상 = 1일, 서울대

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장지 대구 달성군

선산 □ 02-2072-2091

▲김호성 씨 별세, 김광준(한국예탁결제원 펀드서비스부 차장) 씨 부친상 = 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17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

2227-7500

▲안영도 씨 별세, 최익수(부산 메리놀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 최종임·최동준(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내과 교수) 씨 모친상, 전영섭(서울대 경제학부 교

수) 씨 장모상, 배혜정(부산 해운대백병원)·김지영(한의사) 씨 시모상 = 7월 31일 오후 3시, 부산 메리

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30분.

□ 051-465-1024

▲서남미 씨 별세, 황재활(전 한경닷컴 대표) 씨 모

친상 = 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

시 □ 051-636-4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 721-9851, 9826
독자센터	02) 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 00206 2002년 7월 28일 제 4011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 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105호

예산실장 △서재성 연구관리실장 △양준혁 성과혁

신실장 △윤재열 인재경영실장 △박도연 총무구매

실장 △오용준 인프라운영실장

△오윤기(전 농수산부 장관) 씨 별세, 김경숙 씨

부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10호, 발인 3일 오전 9시 □ 02-2227-7500

△김경숙 씨 모친상 =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00